



문의처

- ▶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마케팅처 02)769-6957(FTA),
- ▶ 전국16개 지역본부 수출협력팀 02)769-6725(수출)

부 서	전 화	팩 스	주 소
수출마케팅처	02) 769-6957(FTA), 02) 769-6725(수출)	02) 769-6720	(우150-718)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
서울지역본부	02) 6678-4112	02) 6678-4199	(우158-051) 서울 양천구 목1동 917-6
인천지역본부	032) 450-0533	032) 442-3236	(우406-840)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
경기지역본부	031) 259-7918	031) 259-7901	(우443-766)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-5
강원지역본부	033) 259-7612	033) 256-9614	(우200-042)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
대전지역본부	042) 866-0141	042) 866-0148	(우305-343)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
충남지역본부	041) 621-3648	041) 621-3689	(우331-230) 충남 천안시 북구 광장로 215
충북지역본부	043) 230-6832	043) 230-6888	(우361-800)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상로 50
전북지역본부	063) 210-9913	063) 210-9988	(우561-736)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
대구지역본부	053) 601-5262	053) 601-5301	(우702-010) 대구 북구 유통단지3길 90
경북지역본부	054) 476-9314	054) 476-9319	(우730-350)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
광주지역본부	062) 600-3028	062) 956-7518	(우506-301)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
전남지역본부	061) 280-8040	061) 280-8080	(우534-821)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
부산지역본부	051) 630-7404	051) 646-0502	(우617-801)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
울산지역본부	052) 703-1132	052) 703-1190	(우680-815) 울산 남구 삼산로 274
경남지역본부	055) 212-1373	055) 212-1366	(우641-200)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
제주지역본부	064) 751-2052	064) 751-2058	(우690-732) 제주도 제주시 연삼로 473

2013

FTA

수출컨설팅사업

중소기업청

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SBC

중소기업진흥공단

Small & medium Business Corporation

중소기업청

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SBC

중소기업진흥공단

Small & medium Business Corporation

2013 FTA Export Consulting Business

사업개요

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다양한 애로사항을 국가·전문 분야·품목별로 수요자인 중소기업에게 맞춤형으로 지도·자문

지원규모

700개 업체

사업기간

2013. 3. ~ 예산소진시까지

지원대상

내수기업 및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만불 이하 중소기업

지원한도

5일 이내 2백만원 한도, 소요비용 70%(수혜업체 30% 부담)
* 수출컨설팅은 3일 이내 1백만원 한도

컨설턴트

대기업·금융기관·종합상사·공공기관 근무 경험 등 수출전문가, 관세사·회계사·세무사 등 FTA전문가

컨설팅 내용

① FTA컨설팅(단기) : 수출기업 협력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등 3MD 이내

분 야	세 부 내 용
원산지확인	- FTA원산지확인서 발급 - HS품목분류, 원산지 결정기준, 원산지판정 - 기업당 2개 품목 이내 - 관세사, 회계사/세무사 3MD 이내 * 회계사/세무사는 부가가치 기준위주로 1MD투입

2013 FTA Export Consulting Business

② FTA컨설팅(장기) : 수출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, 인증수출자, 원산지검증, FTA마케팅 등 5MD 이내

분 야	세 부 내 용
원산지증명	-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- HS품목분류, 원산지 결정기준, 원산지판정 - 기업당 2개 품목 이내 - 관세사, 회계사/세무사 5MD 이내 * 회계사/세무사는 부가가치 기준위주로 1MD투입
인증수출자 신청	- 기업 대표 품목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- 관세사 5MD 이내
원산지 사후검증	-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진단을 통한 기업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 제시 - 원산지증명서 작성 확인, 자료보관, 시스템 구축 등 - 관세사, 회계사/세무사 5MD 이내
원산지관리 시스템	- 원산지관리프로그램설치 및 사용방법 교육 - 개별기업 맞춤형 FTA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- 관세사, 시스템 전문가 5MD 이내
FTA마케팅	- 시장조사, 바이어발굴 등 5MD 이내

* 업체희망에 따라 원산지증명, 인증수출자 등 분야별 컨설팅을 5MD내에서 병행

③ 수출컨설팅 : 시장개척, 마케팅, 무역실무 등 3MD 이내 마케팅

분 야	세 부 내 용
수출 컨설팅	계약서 작성 및 검토, 관세환급, 국제입찰, 기술도입, 무역금융, 무역실무, 물류, 수출통관, 시장개척(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), 시장조사, 외환, 인증, 지적재산권, 클레임, 통번역, 합작투자, 해외투자, 해외정부조달, 현지생산, 현지세일즈, 환위험관리, UN조달 등

④ FTA(단기)+수출마케팅 컨설팅 : FTA와 수출마케팅 연계 5MD* 이내

* 예) FTA컨설팅(단기) 3MD + 수출마케팅 2MD, 수출마케팅 3MD+ FTA 컨설팅(단기) 2MD 등 MD와 컨설팅 내용은 업체가 선택

2013 FTA Export Consulting Business

추진절차

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exportcenter.go.kr)의 수출 컨설팅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

